

도하 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2001. 11



외 교 통 상 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도하 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2001. 11



외 교 통 상 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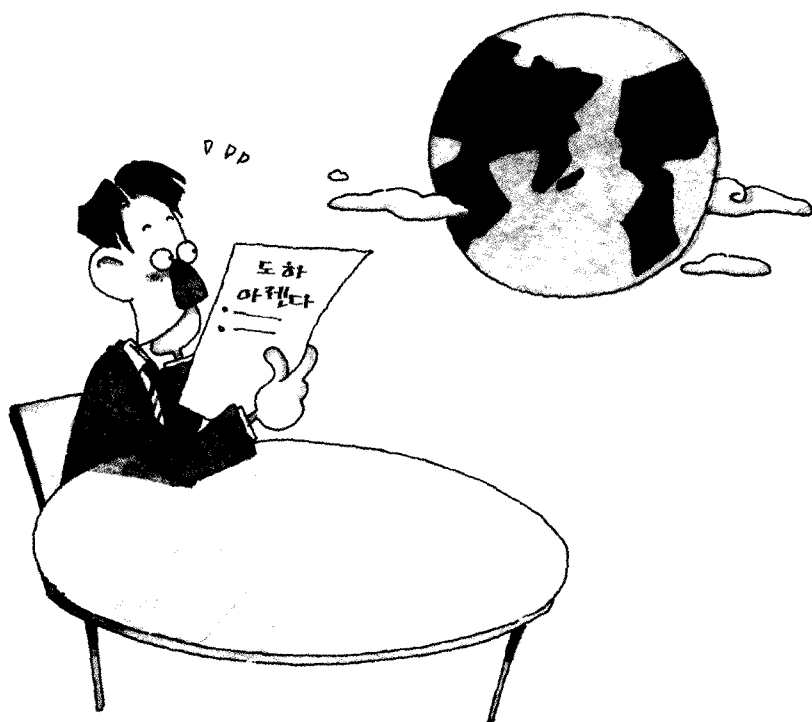
차례

I. 도하 아젠다는 무엇인가	5
1. WTO는 무엇인가	10
2. 도하 아젠다는 왜 필요한가	12
3. 도하 아젠다와 세계화의 관계는 어떠한가	14
II. 도하 아젠다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17
1. 협상방식은 무엇이며, 얼마나 걸릴까	20
2. 협상체제는 어떠한가	21
3. 협상원칙은 무엇인가	23
4. 도하 아젠다의 혜택을 균형있게 분배할 수 있는가	25
III. 도하 아젠다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는가	27
1. 농업협상에서는 무엇을 다루는가	29
2. 서비스협상에서는 무엇을 다루는가	32
3. 공산품 관세협상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35
4. 반덤핑협상에서는 어떤 이슈를 다루는가	37
5. 그 밖의 협상이슈는 무엇인가	39
V. 도하 아젠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41





도하 아젠다는 무엇인가



1. 도하 아젠다는 무엇인가

1. WTO는 무엇인가
2. 도하 아젠다는 왜 필요한가
3. 도하 아젠다와 세계화의 관계는 어떠한가

도하 아젠다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의미한다. 국가간 무역을 관장하는 WTO(세계무역기구)가 회원국들간의 협상을 주관하게 된다.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8차례 이루어진바 있는데, 시장개방의 확대와 무역규범의 제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 및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1995년부터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질서를 재편시킨 바 있다.

WTO회원국들은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최종타결 당시에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합의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또 우루과이라운드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

※ 2001년 11월 14일 종료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도하 개발 아젠다”라고 부르기로 이해한 바, 동 자료에서는 “도하 아젠다”라고 표기하였다.

- 제1차 WTO각료회의: 1996년 12월 싱가포르 개최
- 제2차 WTO각료회의: 1998년 5월 스위스 제네바 개최
- 제3차 WTO각료회의: 1999년 12월 미국 시애틀 개최
- 제4차 WTO각료회의: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 개최

운 무역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 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약 1년 반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에서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개도국의 반대와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에 따라 출범이 무산된 바 있다.

시애틀에서의 실패이후 세계각국은 도하 아젠다 출범에 관한 주요국간의 다자간 협의를 활발하게 벌이고, 도하 아젠다 출범을 지지하는 공동발표문을 속속 채택함으로써 도하 아젠다 출범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특히, 금년 5월 개최된 제3차 ASEAN+3 경제장관회의, OECD 각료이사회, ASEM 외무장관회담, 10월의 APEC 정상회의 등에서는 도하 아젠다 출범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도하 아젠다 출범을 위한 WTO논의는 금년 들어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하빈슨(Harbinson) 일반이사회 의장은 4월 20일 점검표(checklist)를 제안한 바 있으며, 동 점검표를 중심으로 각료선언문 초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일반이사회 의장의 점검표를 중심으로 한 협의를 통해 각료회의 개최 직전인 10월 27일 2차 초안이 마련되었다.

2차 초안은 전체적으로 각국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원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며, 결국 이에 대한 이견조정은 도하각료회의에서의 분야별 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각료회의 개최직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야별 회의가 이루어진 이슈는 ① 농업, ② 규범(반덤핑, 지역협정 등을 포함), ③ 환경, ④ 싱가포르 이슈, ⑤ 이행, ⑥ TRIPS 등 6개 분야였다. 도하각료회의에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각국의 이견을 조정하고 도하 아젠다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 다자무역협상에 라운드라는 명칭이 붙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는데, 초기의 무역협상이 원탁 테이블에서 이루어진 데서 기인한다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다수의 나라가 여러 번에 걸쳐 협상을 벌이는 GATT협상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해석도 있다. 도하 아젠다는 WTO 주관하에 열리게 되는 제1차 다자간무역협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라운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양해하였다.

1

WTO는 무엇인가

도하 아젠다 협상을 주관하게 될 WTO는 상품무역은 물론 서비스무역 나아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까지를 규율하는 잘 짜여진 부속무역협정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144개(중국과 대만 포함)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이다. WTO는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

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 무역자유화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종전의 GATT체제하에서는 주로 공산품의 시장개방만이 추진되었으나, WTO체제에서는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상품등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시장개방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WTO는 국제경제 및 무역관계에 있어 보다 성숙된 법의 지배가 가능하도록 룰(rules)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

※ GATT(General Agreement for Tariffs and Trade)는 1948년 발효된 이래 국제무역협정일 뿐 임시적인 협상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비해, WTO는 완전한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GATT보다 넓은 관할범위를 가진다.

다. 일부 국가들의 일방적 국내법 대신에 WTO규범이 세계의 무역규범으로 자리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 무역거래에 있어 서로 자기 나라의 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면 국제질서가 안정될 수 없다. 모든 국가가 승복할 수 있는 일정한 룰을 정하는 것이 WTO의 중요한 역할이다.

아울러, WTO는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자체의 분쟁해결기구(DSB) 및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WTO는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교차보복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분쟁해결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WTO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교통문제에 비유할 수 있다.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로의 신설 및 확장이 필요하며, 신호등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사고시 경찰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무역규범을 국제질서변화에 맞추어 개정하고, 통상분쟁의 해결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무역을 최근 급속하게 증대되는 것은 이러한 WTO의 역할에 기인하는 바 크다.

※ 교차보복: WTO협정을 위반한 나라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및 타분야에서 교차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시장개방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WTO에서 패소하는 경우 반도체나 자동차에 대한 관세인상 등의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도하 아젠다는 왜 필요한가

자전거가 계속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듯이 자유화가 계속되어야 세계무역질서가 지탱된다는 이론이 있다. WTO가 무역자유화, 다시 말해 시장개방의 가속화를 주요한 임무로 삼고 있는 것은 세계 무역질서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발생하며, 시장개방이 중국적으로 모든 국가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무역자유화가 미치는 영향은 소득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익이 다양하다. 또한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제품의 생산에 특화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세계은행의 분석결과를 보면, 도하 아젠다 협상을 통해 무역보호수준이 40% 삭감될 경우 2005년까지 공산품분야에서 696억 달러의 후생증대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무역자유화로 인해 모든 나라와 모든 계층이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총이익은 손실을 크게 상회한다. WTO가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도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국제적 소득분배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경제는 작년 말부터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미국테러사태의 여파 등으로 세계경기침체의 조짐이 완연하다.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된 최근에는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성장회복을 위해서도 도하 아젠다 협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각국이 수입규제를 남발하고 보호주의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세계적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 지난 1930년대에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보호조치를 발동한 것이 결국 세계대공황으로 이어졌던 역사적 경험은 보호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도하 아젠다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더욱이, 시애틀각료회의에서 다자 무역협상 출범이 실패한 반면 FTA 등 지역주의는 최근 들어 더욱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마저 도하 아젠다가 출범하지 못한다면, 다자체제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있었다. WTO가 무용지물이 되고 지역협정만 확산된다면 세계경제는 몇 개의 배타적 블록으로 구분될 것이다. 따라서, 도하 아젠다는 세계 무역질서에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다.

3

도하 아젠다와 세계화의 관계는 어떠한가

세계화와 정보화가 심화될수록 국제적 분업이 활성화되고 시장경쟁에 따라 경제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화는 세계무역증대 및 안정적 경제성장의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국가들이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나라들의 수출친화적 대외경제정책과 외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였던 세계경제환경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 및 정보화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발도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도 수반되기 때문이다. 우선,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자본이 거의 아무런 제약없이 국경을 넘나 들면서 정부의 통제권을 벗어나 국가경제운영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노동, 환경 등에 대한 규제조치의 실효성도 감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노동단체와 환경보호단체의 반발도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 또한, 외채, 빈곤, 환경·에너지 등 세계경제의 위기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국가간에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음에 따라 반세계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아울러, 교육·정보 격차(소위 digital divide)의 확대 및 실업증가라는 부정적인 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세계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70~80년대에 중남미국가들은 외부지향적인 정책 대신에 국내지향적인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넓어진 세계시장에 편입되지 못하였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외국원조에 의존하고 국내경제를 개방하지 않음으로써 경쟁에서 도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는 경제성장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결국, 야누스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지닌 세계화는 각국의 대응여하에 따라서 구체적인 영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화의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도하 아젠다와 같은 국제무역협상에서 국가간 공평한 혜택의 분배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파급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세계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무역질서는 보다 시장친화적이 되어야 하며, 공정한 무역규범을 통해 통상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화와 아시아금융 위기

1997년 외환위기는 세계화를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던 우리경제에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주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모형의 어떤 측면이 위기의 원인이었으며, 향후 어떠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것인가?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는 은행의 과다한 대출, 불량채권에 대한 감독 취약, 금융자유화에 대한 대응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세계화의 부정적인 파급영향에 대응한 아시아경제의 대책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못한 점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II

도하 아젠다는

어떻게 진행되는나



II. 도하 아젠다는 어떻게 진행되나

1. 협상방식은 무엇이며, 얼마나 걸릴까
2. 협상체계는 어떠한가
3. 협상원칙은 무엇인가
4. 도하 아젠다의 혜택을 균형있게 분배할 수 있는가

그
□ 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도하 아젠다를 출범시킴으로써 향후 세계무역질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들도 새로운 도하 아젠다 협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하각료회의에서는 도하 아젠다 협상의 구체적 의제들을 선정하였다.

특히, 도하 아젠다에서 다룰 협상의제의 범위(scope)는 소위 기설의제(built-in agenda)인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의 추가개방뿐만 아니라 공산품의 관세인하 등을 포함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문별협상이 아니라 포괄적 협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어느 특정분야만을 다룬다면 각국간 이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협상분야를 망라하게 된다. 시장개방분야, 반덤핑·보조금·지역무역협정 등 규범분야, TRIPS, 무역과 환경 등 광범위한 의제가 도하 아젠다 협상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다수의 규범 분야가 협상 의제로 포함된 점이 금번 도하 아젠다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 기설(既設)의제는 농산물, 서비스 등 WTO협정에 협상의 대상과 개시시점 등이 명시된 의제를 일컫는다.

1

협상방식은 무엇이며, 얼마나 걸릴까

도하 아젠다의 협상 방식(modality)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의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진행, 동시에 종결하고, 모든 참가국이 협상 결과를 수용하는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package deal)이 적용된다. 일부 분야의 협상결과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협상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UR협상과 마찬가지로 일괄타결방식이 채택된 것이다. 다만, 조기 합의사항은 조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합의하였다.

향후 도하 아젠다 협상은 2005년 1월 1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문별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농업협상의 경우 세부원칙의 수립시한을 2003년 3월 31로 정하였으며 양허안 제출시한은 5차 각료회의 이전으로 정하였다. 서비스협상의 경우 양허안 요청시한은 2002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양허안 제출시한은 2003년 3월 31일로 정하였다.

지난번 UR협상이 7년이나 걸린 것은 주요 이슈에 대한 회원국들간의 상호이해관계가 엇갈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협상기간이 지연되면서 무역질서의 변화에 따라 계속 새로운 이슈가 대두된 점도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가급적 빠른 시기내에 협상을 종결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하 아젠다 협상은 2005년 1월 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합의되었으나, 실제로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2

협상체계는 어떠한가

WTO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이다. 각료회의는 최고의 의사 결정기구로서 회원국 대표들이 주기적(원칙적으로 2년)으로 모여 주요사안들을 결정하며, 상설 기구인 일반이사회(주로 각국의 WTO대사가 대표로 참석)는 각료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며 평소에 각료회의의 임무를 대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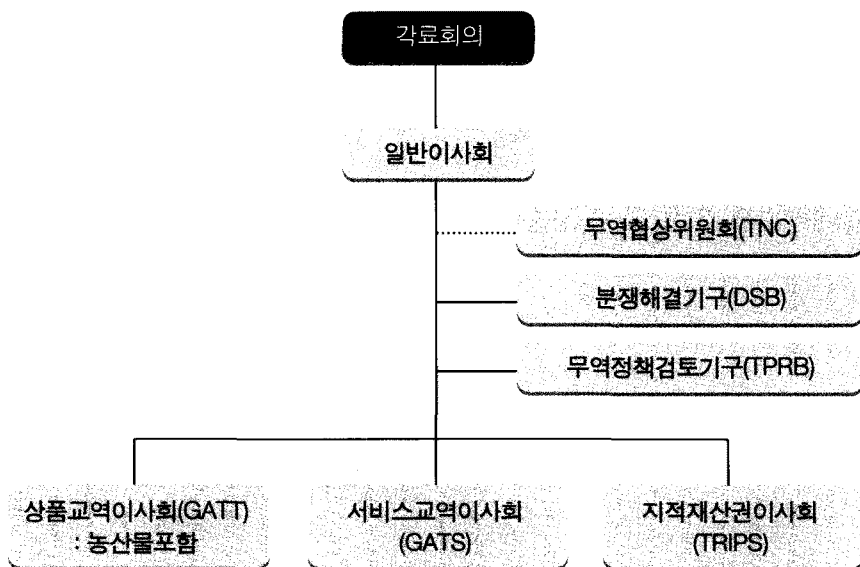
각료회의가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제5차 각료회의는 도하 아젠다 협상의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결정을 채택할 예정이다. 모든 분야의 협상이 종결되면 특별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협상결과의 채택 및 이행에 관한 마무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이사회 산하에 신설될 무역협상위원회는 전반적인 협상과정을 총괄하게 되는데, 제1차 무역협상위원회는 2002년 1월 31일 이전에 1차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무역협상위원회는 필요한 협상기구를 설치하고 협상전반을 감독하게 된다.

현재, 일반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분야별 기구는 상품교역이사회를 비롯하여 서비스교역이사회와 지적재산권이사회가 있다. 아울러 일반이사회가 직접 관장하는 분쟁해결기구가 있으며, 이 기구가 WTO회원국간의 통상분쟁을 해결하는 세계무역의 감시자 역할을 한다. 한편, 무역정책검

토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제도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각국의 전반적인 무역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게 된다.

〈WTO의 구조〉



3

협상원칙은 무엇인가

도하 아젠다 협상은 모든 WTO회원국들의 효율적인 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다. 아울러, 모든 참여국에게 이익이 균형되게 분배되도록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도하 아젠다 협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WTO의 일반원칙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에 적용된다.

첫째, 국제무역 및 투자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 WTO 회원들은 교역상대국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교역상대국들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대우 원칙과 자국과 외국의 상품, 서비스 또는 자연인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국민대우 원칙이 모두 포함된다.

둘째, 협상을 통해 시장개방 및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관세를 포함한 일체의 무역장벽은 협상을 통해 낮추어야 하고, 서비스분야의 경우 점진적인 자유화를 통해 시장개방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구속력 있는 약속을 제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외국의 기업, 투자자, 정부에게 무역장벽을 자의적으로 높이지 않을 것과, 보다 많은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할 것등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미래의 사업기회에 대한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넷째, 공정경쟁을 촉진한다. WTO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과 더불어 보다 공정한 무역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덤핑수출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규제를 허용한다.

다섯째, 경제개발 및 개혁을 장려한다. 개도국 및 특히 최빈개도국의 '무역을 통한 경제개발'을 특별하게 지원한다.

4

도하 아젠다의 혜택을 균형있게 분배할 수 있는가

도하 아젠다 협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WTO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선진국과 개도국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일부 국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만 해도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에도 못미치는 최빈개도국이었으나, 1996년에 만불소득을 달성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힘입은 바 크다. 만일 국제 무역환경이 시장개방보다는 보호주의를 추진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우리기업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도 해외시장에 내다팔 수 없었을 것이며, 오늘과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은 세계적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개도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WTO가 미국 등 선진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등 중진국과 개도국의 이익대변에는 소홀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종전의 GATT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사례를 보면, 선진국이 개도국을 제소한 사례에서 패소한 사례가 별로 없었지만 WTO가 출범한 이후에는 개도국들이 선진국을 제소한 사건에서 선진국이 패소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D-RAM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WTO에 제소하여 승소한 바 있다.

WTO는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한다기 보다는 룰에 근거한 세계무역질서(rule-based system)를 규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WTO 규범의 합치여부에 따라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국과 개도국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 미국은 종전에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던 슈퍼301조의 발동을 자제하고 있으며, 슈퍼301조 자체가 WTO에 제소된 사실은 선진국의 일방적 무역조치가 WTO체제하에서는 상당히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아울러, 도하 아젠다 협상에서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최빈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세무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무역개발위원회 검토 등 별도의 고려를 하고 있다.

III

도하 아젠다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는가



III. 도하 아젠다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는가

1. 농업협상에서는 무엇을 다루는가
2. 서비스협상에서는 무엇을 다루는가
3. 공산품 관세협상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4. 반덤핑협상에서는 어떤 이슈를 다루는가
5. 그 밖의 협상이슈는 무엇인가

1

농업협상에서는 무엇을 다루는가

농업분야는 우루과이라운드(UR) 이전에는 국제무역협상의 논의대상이 아니었으나, UR협상에서의 합의에 따라 처음으로 예외없는 시장개방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그후, 2000년초부터 UR 당시의 합의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WTO회원국간의 협상이 개시되어 2001년 3월에 이미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다.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2000년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농업협상도 도하 아젠다 협상의 일부로 진행되어야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앞으로 도하 아젠다 협상에서는 농업분야에 있어 보호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국내보조의 감축, 수출보조의 단계적 철폐 등이 논의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협상원칙과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EU, 일본 등이 주장한 NTC가 고려사항으로 반영되어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농산품의 시장개방에 있어서는 식량안보, 환경, 농촌개발 등 농업의 비교역적 고려사항(NTC: Non-Trade Concerns)이 고려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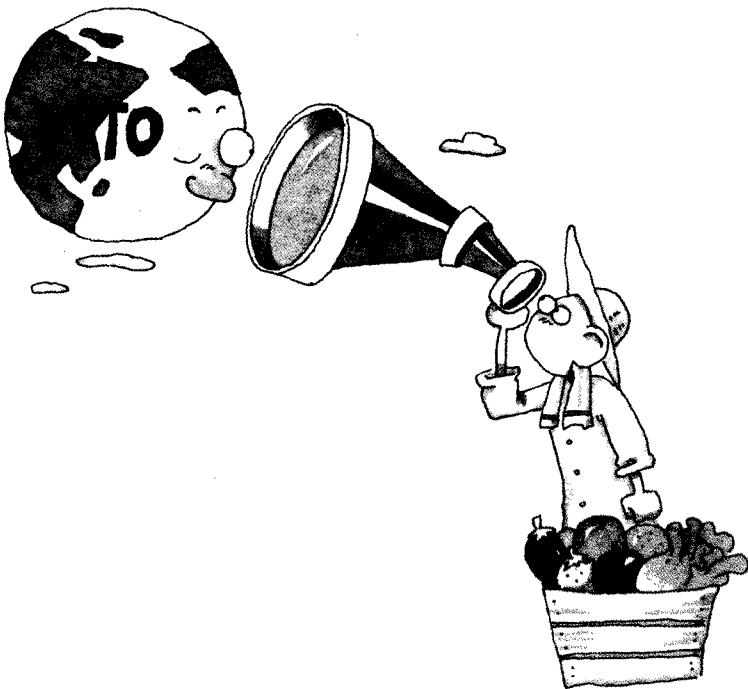
원래 WTO 다자간 무역협상은 무역장벽을 줄여나감으로써 세계무역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적하에 추진되는 것이며, 세계 농산물시장이 심각한 수급불균형 현상을 보임에 따라 세계적 차원의 농업개혁이 필요하다

는데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관세나 보조금은 줄여나가는 추세이므로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수입국의 입장은 수세적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다가, 개도국들이 농산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농업협상이 본격화되면 협상여건은 농산물 수입국에게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쌀시장 접근문제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2004년 말까지 국내소비량의 4%까지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 접근방식으로 합의되어 WTO 농업협정에도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다른 회원국들이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우루과이라운드 합의사항은 적어도 2004년말까지는 인정되는 것이다. 그밖의 품목에 있어 도하 아젠다 농업협상의 결과가 우리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농산품에 대한 관세 및 농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감축 폭에 대한 협상결과에 달려있다.

향후 도하 아젠다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여하히 반영될 것인지에 따라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전략과 입장이 모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WTO가 존재하는 한 농업의 추가 개방 및 자유화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적극적인 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이 갖는 여러 특성 및 농업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자원 등을 고려하여 우리의 농업시장 개방 및 자유화를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중장기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2

서비스협상에서는 무엇을 다루는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에 따라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서비스분야의 국제 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으로서 탄생되었다. 서비스협정이 상품분야 협정과 다른 점은 서비스협정은 각 회원국이 국가간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는 최혜국대우(MFN: Most-Favored-Nation)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이었다. 아울러 각국이 개방 분야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방 분야에 있어서도 사전에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 사항을 허용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원칙적으로는 서비스 개방을 약속하면서도 시장개방 및 자유화약속의 수준이 높지는 않았다.

※ 최혜국대우(MFN: Most-Favored-Nation)는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무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 회원국은 모든 여타 회원국들을 가장 좋은 혜택을 받는 교역상대국과 같이 대우한다. 어느 국가가 특정국가에게 특혜를 베풀 경우에는 다른 모든 나라에게도 똑같은 최상의 대우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및 양허 업종에 있어 부과되는 각종의 제한 사항 및 국내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후속협상을 2000년부터 개시하도록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 2월 서비스후속협상이 개시되었다.

2000년 2월 서비스 후속협상이 개시된 이후 2001년 3월에 제1단계 작업을 완료하여 협상범위와 방식, 일정 등에 대한 협상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으며, 2002년 3월까지 분야별 주요 무역장벽에 대한 협상제안서 등을 논의하는 제2단계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비스후속협상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회원국 서비스시장의 개방확대와 양허한 서비스업종에 있어 외국의 서비스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가능한 한 감축하는데 있다. 따라서 서비스와 아울러 농업, 공산품 등 여타분야를 균형있게 개방시키는 도하 아젠다의 출범을 통해 서비스후속협상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4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도하 아젠다가 출범하였기 때문에 각국은 선언문에 포함된 일정에 따라 서비스 분야별 request/offer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벌이게 된다.

※ request/offer: GATT의 1~5차 협상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사용된 양허협상방식으로서 협상참가국들이 주요품목에 대해 양허요구 List와 양허가능 List를 준비하여 시장개방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과 특히 1997년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일련의 자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2001년 10월 현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서비스업종은 17개 업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부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도하 아젠다 서비스협상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개방 및 자유화 요구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는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와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서비스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의 기회로서 서비스협상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공산품 관세협상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공산품 관세인하는 지금까지 8차례의 국제무역협상에서 실질적으로 중심적인 논의의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관세협상이 없었던 지난 1950년부터 1961년까지 세계총생산(GDP)은 1.6배 증가한 데 비해 세계총수출은 2.1배 증가한데 그쳤다. 그런데, GATT체제하에서 처음으로 관세협상이 이루어진 1961년 이후 1999년까지의 기간중 세계총생산은 3.9배 증가한데 비해 세계수출은 8.4배가 증가함으로써 세계수출의 증가세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GATT체제하에서 관세협상의 성공적 이행이 지난 40여년 동안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건인차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무역계의 일각에서는 GATT체제하에서 주요국의 관세가 이미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관세협상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관세는 WTO체제하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무역장벽으로서 종전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종전에는 관세가 외국상품의 수입을 막는 무역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나, WTO체제하에서는 WTO회원국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수단인 것이다.

또한,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상품간의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단 1%의 가격경쟁력의 차이가 시장의 성

패를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관세율이 크게 낮아진 최근에도 상대국의 관세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도하 아젠다에서도 관세협상은 중요한 협상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평균관세율은 낮지만 섬유, 신발 등의 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으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평균관세율이 20%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하 아젠다에서는 관세협상의 범위와 목표, 협상방식, 협상기준세율 등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로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공산품관세율은 선진국보다는 높지만 평균 6%대의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도하 아젠다 이후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개도국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출 확대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의 경우 전반적인 관세율수준은 매우 낮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 고관세 내지 차등관세율구조를 유지함으로써 품목별로는 높은 관세장벽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도하 아젠다 관세인하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기회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타회원국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세인하방식을 제시하면서 품목별 협상의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협상력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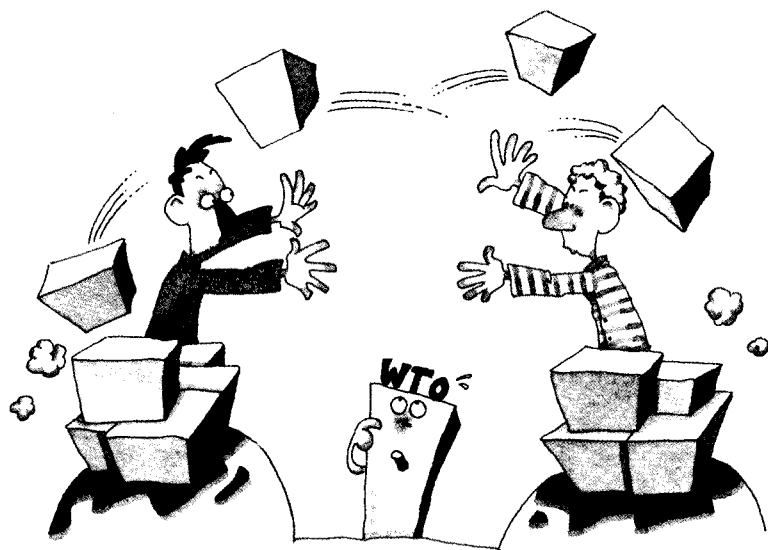
반덤핑협상에서는 어떤 이슈를 다루는가

덤핑은 수출자가 자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에 비해 싼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덤핑행위는 일반적으로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제무역을 왜곡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WTO체제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공정무역으로 간주된다. WTO반덤핑협정은 이러한 불공정무역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부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덤핑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불공정행위이지만 수입국의 자의적인 반덤핑관세의 운영 또한 국제무역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WTO 출범 이후 반덤핑관세의 발동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세계적으로 반덤핑조사가 급증하고 있는데다가, 반덤핑제소가 무혐의 판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덤핑을 억제하기 위한 WTO규정이 실질적으로 피소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보호무역조치로 활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도하 아젠다 협상에서는 반덤핑제도의 발동요건, 덤핑마진 결정, 재심절차 등을 개선하여 본래의 목적에 합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미국은 국내적인 민감성을 이

유로 현행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 논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으나, 다수 국가가 반덤핑 조치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자국 기업들도 피해 대상이 되면서, 규범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고, 도하 아젠다 출범을 위한 합의 형성을 위해 반덤핑협정 개정의 의제 포함에 동의하였다.



5

그 밖의 협상이슈는 무엇인가

도하 아젠다에서는 앞으로 규범 분야에서 보조금(수산 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에 적용될 WTO조항을 명확화)에 관한 협상도 벌일 것이다.

또한, 최근 새로운 통상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무역과 투자(외국인투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수립), 무역과 경쟁정책(경쟁정책을 일정한 국제적 수준으로 규율), 무역원활화(통관절차의 신속화 및 투명성 증대), 정부조달에서의 투명성(정부조달에 있어 부패관행의 규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도입) 등에 대해서는 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방식을 결정하고 5차 각료회의 이후에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그러나, 한때 미국이 제기하였던 무역과 노동기준(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국가에서 제조된 물품의 교역 제한) 이슈는 회원국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여 도하 아젠다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한편, 무역과 환경이슈는 WTO 기존규범과 MEA(다자간환경협약)의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 등 일부 의제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 한편,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등 여타 의제는 지금까지 처럼 무역환경위원회(CTE)가 작업을 계속하고 제5차 각료회의에서 향후 협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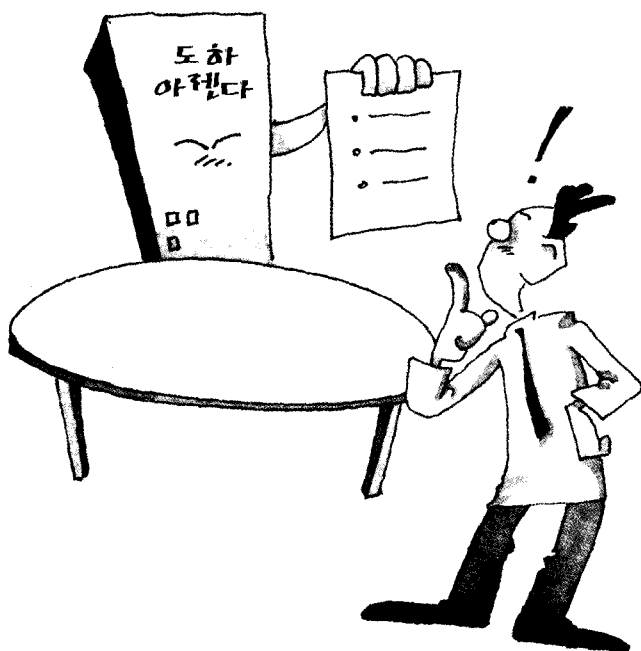
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이슈들은 협상의제의 채택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으며, 일부 선진국들과 대다수의 개도국들이 관련제도의 미비와 국내정책수행에 제약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에는 다소간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도하 아젠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21세기에는 세계화 및 정보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20세기의 국제질서와는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가간에 모든 상품과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되며, 경제활동의 효율성도 크게 높아지게 된다.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우리제품’과 ‘외국제품’ 간 구분도 없어지게 된다.

도하 아젠다 협상은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하여 WTO회원국들이 합의를 통해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선진국들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거나, 개도국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순이 아닌 것이다. 우리와 같은 대외지향적 국가는 도하 아젠다 협상을 통해 무역질서가 안정되고 보호주의가 억제되면 일부 손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자유무역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선진국들의 무역장벽을 억제하고 자유무역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협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도하 아젠다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다.

농업, 일부 서비스업 등 국내적으로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화의 폭과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도록 협상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개발, 기술개발, 환경보호 등 WTO체제에서 허용되는 정부의 보조금을 새롭게 발굴하여 고품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 부문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농업인 등 이들 부문의 종사자들도 개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수출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향후 도하 아젠다 협상이 타결되면,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술,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정책간 상호연계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각 부처의 담당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범정부적 대책위원회를 98년 7월부터 구성하였으며, 그 산하에 분야별 실무대책반도 운영해 왔다. 이제 도하 아젠다가 정식으로 출범하고, 협상 의제가 명확해진 상태인 바, 이를 반영하여 대책위원회 및 산하 대책반을 확대·개편하고자 하며, 동 대책 기구에는 다자간 협상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아울러 비정부민간기구(NGO)와 일반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여 도하 아젠다 협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WTO는 만장일치제로 합의를 도출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국 비공식협약에 참여하여 의사결정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WTO의 공식 및 비공식 주요국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각 의제별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경제의 개혁 및 개방을 빠르게 추진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도하 아젠다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추가 개방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 경제 구조의 선진화와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또한, 도하 아젠다 협상이 향후 3년여의 기간동안 진행될 것으로 전망 되기 때문에 국내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 정부로서는 향후 협상의 결과가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GATT/WTO체제하의 무역협상〉

차수	라운드명칭	협상년도	참여국수	협상된 무역규모	평균관세 인하율
1	Geneva	1947	23	100억불	35%
2	Annecy	1949	33	n/a	-
3	Torquay	1950	34	n/a	-
4	Geneva	1956	22	25 억불	-
5	Dillon	1960-61	45	49 억불	-
6	Kennedy	1962-67	48	400 억불	35%
7	Tokyo	1973-79	99	1,550 억불	34%
8	Uruguay	1986-1993	123	10,780 억불	34%
9	Doha Development Agenda	2001~	144	-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전화: 02)739-9142 FAX: 02)738-9762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화: 02)3460-1160 FAX: 02)3460-1077

<http://www.kiep.go.kr>